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017호
- 나. 발 의 자 : 김 경 의원 등 18명
- 다. 발의일자 : 2023. 8. 14.
- 라. 회부일자 : 2023. 8. 21.

### II. 제안이유

-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중 ‘놀 권리’의 확보를 위해 방과 후와 주말, 휴일에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 함. 이에 개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방하지 않는 근거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III. 주요내용

- 가.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조항 신설

나.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

#### IV. 참고사항

1.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김경 의원 등 18명이 의안 번호 제1017호로 공동발의하여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의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방 제한 근거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가 학교 교육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 조례는 ‘학교 교육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학교장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개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동 조례 제3조제1항).
  - 그러나 동 조항은 교육활동 등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사용 제한이 발생되거나, 반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여전히 시설개방에 소극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sup>1)</sup>.

1) 연합뉴스(2015.7.29.). “학생안전이나 주민공유냐” 학교시설 개방 양면.

[표-1]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

(2022년도 기준)

연도	전체 학교수	운동장		체육관	
		개방 학교수(%)	미개방 학교수(%)	개방 학교수(%)	미개방 학교수(%)
초등학교	601(100.0%)	264(43.9%)	337(56.1%)	141(23.5%)	460(76.5%)
중학교	384(100.0%)	220(57.3%)	164(42.7%)	111(28.9%)	273(71.1%)
고등학교	317(100.0%)	150(47.3%)	167(52.7%)	73(23.0%)	244(77.0%)
전체	1,302(100.0%)	634(48.7%)	668(51.3%)	325(25.0%)	977(75.0%)

- 동 개정조례안은 개방제한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을 좀 더 구체화 하고 개방제한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개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그동안 있었던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생과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

- 안 제3조제1항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의 원칙에 있어 ‘교육활동’을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으로 규정(안 제3조제1항)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동 조례 제3조제1항2)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학교장이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시설 개방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중앙일보(2015.7.8.). 학교시설개방논란...“학생 안전 우선이다” vs “주민도 이용 권리 있다”

2)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이에 안 제3조제1항은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 등으로 예시하여 학생들이 주로 교육활동을 하는 시간 이외에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 또는 공휴일 등에 학교장의 비협조로 인한 학교 시설 미개방 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학교 시설 개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안 제3조의2는 학교시설 개방의 제한 사유를 각호<sup>3)</sup>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 제3조의2는 학교 시설 개방을 동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원칙을 기반으로 개방 제한 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장의 시설개방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장의 시설개방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시설 사용자에게 대한 미개방 사유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3조의2제5호는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의2(개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러나 안 제3조의2제5호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을 상당 기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자칫 오용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 현재 6개월 이상 학교시설 장기 사용의 경우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sup>4)</sup>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시설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없음”을 제출 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81, 2023.8.22.)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2180-8270)
----------	----------------	-------	----------------

4) 제11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